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4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 김두관·김원이·신정훈

이상헌 · 고영인 · 이규민

최인호 · 김주영 · 송영길

정필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이전 후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72개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877만 원인 것에 비해 상위 8개 일반 법인의 1인당연평균 감면세액은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이 중 6개 법인은 연평균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하였음. 즉, 많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데 비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형평성 훼손 및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을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세액감면신청"을 "상시지방근로자의 범위, 상시지방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고용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지방근로자"라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지방근로자 수에 1천5

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7. 감면받은 과세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지방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지방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3조의2제5항"을 "제63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 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 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2)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 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 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 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 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u>100분의 5</u>
<u>0에 상당하는 세액</u>
<u>100</u> 분
<u>a 30</u>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는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고용한 상 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 시지방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

<u>⑤</u>·<u>⑥</u> (생 략)

①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시지방근도자 수에 1전5백만원
을 곱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
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
<u>다.</u>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⑧</u> 제2항 및 제5항
1. ~ 6. (현행과 같음)
7. 감면받은 과세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지방근로
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u>상시지방근로자 수보다 감소</u>
한 경우
9
<u>제8항</u>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 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 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 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①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 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 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 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 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 아야 한다.

① 제1항부터 <u>제5항</u>까지 및 <u>제</u> <u>7항</u>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u>세액</u> <u>감면신청</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u>
<u>⑩</u> 제7항
제8항제1호
·.
<u>①</u> <u>제2항 및 제5항부터</u>
<u>제7항까지를</u>
① <u>제6항</u>
 제8항
상시지방근로자의 범위, 상
시지방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지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 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 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 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 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 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 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

		면신청 	_		
제		최저한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 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 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 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 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 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1. (생략)
-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3. 4. (생 략)
- ② ~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체63</u>
조의2제6항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